

김승연 한화회장 사회봉사명령 연기

법무부, 신병치료 사유 3개월 늦춰 ... 3년 사이에 마치기만 하면 돼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형과 함께 내려졌던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김승연 회장의 신병 치료를 사유로 3개월 늦춰졌다.

10월10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9월 추석연휴 직전 우울증과 충동장애 등 병 치료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3개월간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관할 보호관찰소에 제출해 받아들여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등을 낼 때와 비슷한 사유로 사회봉사명령 연기 신청을 냈고 보호관찰소에서 진단서 등을 검토한 결과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승연 회장은 12월 하순까지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연기되며 이후 또 다시 연기 신청을 내더라도 사유가 타당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행하면 문제가 없으므로 김승연 회장은 집행유예기간인 3년 사이에 사회봉사를 모두 마치기만 하면 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승연 회장은 9월1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10>